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군사법원 판결서의 열 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판결서 공개의 범 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법원의 투명성・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O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(안 제5조제1항)
- 4.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군사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"를 "확정된 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열람 · 복사의 방법과 절	제5조 (열람 · 복사의 방법과 절
차)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	차) ①
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	<u>확정된 후</u>
<u>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</u> 해당	
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	
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	
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	
방법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피	
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	
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	
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	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58